

사단법인 날개숲 정관

2023. 5. 23. 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

이 법인은 "사단법인 날개숲"(이하 "본회"라고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목적)

본회는 청년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청년들과 함께하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강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

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- ① 청년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
- ②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
- ③ 청년 활동가 양성 교육 사업
- ④ 청년 대상 복합공간 및 시설 운영 사업
- ⑤ 청년 문화 활동 지원 사업
- ⑥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

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

- ① 명예회원: 청년 문화·예술·미디어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

본 법인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

- ③ 단체회원: 본 법인을 위해 각종 기금과 운영을 위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법인, 단체, 기업

회원 상호 간 유대에 충실할 수 있는 소정의 능력을 갖춘 자

제6조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단, 준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 또한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-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- ②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 이행
-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제8조(회원의 탈퇴)

회원은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9조(회원의 상벌)

-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 대표이사 1인
- ② 이 사 5인 - 7인 (대표이사 포함)
- ③ 감 사 1인

제11조(임원의 선임)

-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-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② 임원 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3조(임원의 선임 제한)

-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4조(상임이사)

-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-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③ 상임이사의 직무와 임기는 이사의 퇴임 및 해임의결 직후 그 권한이 종결된다.

제15조(임원의 임기)

-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6조(임원의 직무)

- ① 대표이사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
요구하는 일

5.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7조(대표이사의 직무 대행)

- 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-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18조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9조(구분 및 소집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.

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

-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3.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1조(의결정족수)

-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② 본회의 해산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④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⑥ 사업계획의 승인
- ⑦ 기타 중요사항

제23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
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4조(총회의사록의 인증축택)

총회의사록은 재적이사 과반수로 인증축택 할 수 있다.



제25조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6조(이사회의 소집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- ②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-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
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8조(서면결의)

-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9조(의결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② 이사회는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30조(이사회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⑧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

제 6 장 재 산 과 회 계

제31조(재산의 구분)

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- ① 기본재산은 본회의 설립 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"별지1"과 같다.
-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2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

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·증여·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33조(수입금)

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34조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5조(예산편성)

본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36조(결산)

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7조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8조(회계의 공개)

-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-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.

제39조(임원의 보수)
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~~상임이사~~를 제외한 ~~임원~~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~~안한다~~다. 단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7 장 사 무 부 서

제40조(사무국)

- 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. 단, 창립 시 사무국장은 창립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- ⑤ 사무국 직원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선임과 해임의 권한을 갖는다.

제 8 장 보 칙

제41조(법인의 해산)

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본회의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

제42조(정관변경)

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

제43조(규칙제정)
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2023년 5월 14일

발기인 (대표

발기인

발기인

발기인

발기인

[별지 1]

기 본 재 산 목 록



(단위 : 원)

재산구분	수 량	평 가 액	비 고
해	당	없	음
		 	
총 계		0	